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발의연월일: 2019. 11.

발 의 자: 강명숙 위원 외 1명

1. 주 문

- 가.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- 나. 특별위원회 위원의 수는 9인 이하로 하며, 활동기간은 구성일 로부터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등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.
- 다.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제127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제5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」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가.「지방자치법」제5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

나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제2항

[관 련 법 령]

■ 지방자치법

[시행 2017.7.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7.26., 타법개정]

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-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제127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·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·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

■ 지방자치법 시행령

[시행 2019. 7. 1.] [대통령령 제29609호, 2019. 3. 12., 일부개정]

제56조(특별위원회의 설치)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한다.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

[시행 2019. 8. 8.] [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244호, 2019. 8. 8., 일부개정]

제7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- ② 의회는 예산안 및 결산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-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-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